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5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입학준비금을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폭넓게 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의규정에서 학교에 초등학생 및 「초·중등교육법」에 상응하는 정규과정을 교육하는 학교 추가(안 제2조)
- 나.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조문 수정 및 지원제외대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문 추가 (안 제4조)
- 다. 초등학생 등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기준 수정(안 제5조)
- 라. 학교장이 접수 기관인 경우 지원절차의 명확화(안 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회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을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교육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동작구”를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중·고등학제) 등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두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구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그 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교복구매 평균가격, 입학준비”를 “입학준비”로, “구청장이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학교장은”을 “학교장이”로, “후”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p> <p>제4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을 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중·고등학제) 등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p> <p>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p> <p><신 설></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교육하는 -----.</p> <p>제4조(지원대상) ① 입학준비금 지원 -----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 두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p> <p><삭 제></p> <p><삭 제></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구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그 밖에 보편적 교육복</p>

제5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 가격,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생략)

제6조(지원절차) ① (생략)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 ① -----

----- 입학준비 -----

-----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장이 ----- 경우
에는 -----

-.

③·④ (현행과 같음)